

[별첨 3] 검사원의 자격 기준

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(검사원 등) 관련

○ 다음 각 호(1~6)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
1. 가스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(아래의 표 참조)

기술사	가스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, 용접기술사, 금속재료기술사, 화공기술사
기능장	가스기능장, 용접기능장, 금속재료기능장
기사	가스기사, 공조냉동기계기사, 용접기사, 일반기계기사, 금속재료기사, 화공기사
산업기사	가스산업기사,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,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, 금속재료산업기사, 화공산업기사
기능사	가스기능사, 공조냉동기계기능사

2.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·기계·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

3. 이공계대학의 화학·기계·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4.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·기계·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경력이 있는 사람

5. 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6. 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